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와 동일하게 해당조문 제목 변경
  - 현 행 :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개 정 : 제4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 삭제
  - 현 행 : 5년간 재산세 면제
  - 개 정 : 재산세 면제

※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아케이드) 및 재산세 감면 현황 (감면액 기준: 2012년)

시장명	위 치	소유자	연면적	점포수	설치년도	감면 시작년도	감면 종료일	재산세	재산세 감면액
사려가시장 신영사려가시장	신길동 257-10	(주)사려가 (주)신영사려가	400.59 ㎡	94	2006 년	2008년	2012년	100% 감면	430,420 원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동 2가 335	영등포구	5,959㎡	727	2011 년	2013년	2017년	100% 감면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조문 제목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현행 5년인 재산세 면제기한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여 재산세 면제기한을 삭제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12년 7월 24일 시세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자치구세 감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예시안을 참고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시장현대화 시설물(아케이드)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다수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위하여 조성된 공익시설이며,
-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구 재정운용에 큰 영향이 없고, 대형 마트에 비하여 시설 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통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재산세 감면기한 삭제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5 호
----------	---------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과 동일하게 해당조문 제목 변경

○ 현 행 :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개 정 : 제4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 삭제

○ 현 행 : 5년간 재산세 면제

○ 개 정 : 재산세 면제

※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아케이드) 및 재산세 감면 현황

(감면액 기준 : 2012년 )

시장명	위치	소유자	연면적	점포수	설치년도	감면시작년도	감면종료일	재산세	재산세감면액
사려가시장 신영사려가시 장	신길동 257-10	(주)사려가 (주)신영사려 가	400.59 ㎡	94	2006 년	2008년	2012년	100% 감면	430,42 0원
영등포전통시 장	영등포동 2가 335	영등포구	5,959 ㎡	727	2011 년	2013년	2017년	100% 감면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10.18 ~ 11.7)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b>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b></p>	<p>제4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 ----- ----- ----- ----- <b>과</b> <b>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b> <b>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b> <b>한다.</b></p>